

대전지방법원 2023. 3. 9 선고 2023가단200540 판결 [연대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1. B

2. C

소송대리인 B

변 론 종 결 2023. 2. 16.

판 결 선 고 2023. 3. 9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. 12. 1.부터 2022. 12. 21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주식회사 D의 대표인 피고들이 2022. 8. 1. 위 회사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 114,000,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면서 38,000,000원은 2022. 8. 1.까지, 76,000,000원은 11. 30.까지 각 변제하기로 원고와 약정한 사실, 피고들은 2022. 8. 9. 38,000,000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76,000,000원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.
2. 피고들은, 원고가 수급한 전기공사를 완공할 것(완공검사필증 사용승인 동의용서 제출)을 조건으로 연대보증한 것인데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, 위 주장사실(피고들의 연대보증이 조건부인 점, 원고의 공사 미완료)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다툼은 받아들일 수 없다(완공검사필증 등의 교부도 원고의 의무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)
3.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. 12. 1.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2. 12. 21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4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.

판사 김성대